

접수번호		M291-26-		검사자	안전현 (서명)		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8부. 폐쇄형놀이기구				결과치 "-": 해당없음	
일반		이 부에 의해 명시된 폐쇄형 놀이기구의 안전요구사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제1부의 요구사항을 따를 것. 폐쇄형놀이기가 실내에 설치 될 경우 기둥 등 구조물은 부드러운 재질로 감싸져 있을 것				☐ 합 ☐ 불 ☐ -	
비상시 대피와 방화 안전	가연성 재료	딱딱한 자재 딱딱한구성품	딱딱한 구성품(예, 터널, 미끄럼틀, 울타리 등) UL 94에 따라 시험하며, 시험 결과는 HB(수평연소)급 이상일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	스펀지패딩 (파이프 감싸는 스펀지 제외)	KS M ISO 97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일 것 스펀지 패딩이 직물, 코팅 또는 필름으로 감싼 경우 이 자재들은 '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제 3부 4.4에 부합할 것)			☐ 합 ☐ 불 ☐ -	
		파이프 감싸는 스펀지패	KS M ISO 97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일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	볼풀 공	발포제품의 경우 KS M ISO 9772에 따라 시험시 HBF급 이상일 것 속이 빈 성형제품인 경우 UL 94에 따라 시험시 HB급 이상일 것			☐ 합 ☐ 불 ☐ - ☐ 합 ☐ 불 ☐ -	
	대피	성인의 접근	어린이가 기구 안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성인이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	몸 전체의 얹매임	몸 전체의 얹매임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은 제1부의 터널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	대피로	대피로의 높이는 적어도 1 300 mm 이상, 너비는 900 mm 이상일 것. 단, 수용인원이 20명 미만이라면 너비는 720 mm 이상으로 줄여줄 수 있음)			높이 () 너비 () ☐ 합 ☐ 불 ☐ -	
		수용능력 (사용자수)	수용능력(사용자수, C1)은 다음 식으로 구해짐. $C1 = (C2 + C3) / 3$, C2 : 제1부에 따라 계산된 사용자수, C3 : m2당 3명의 어린이가 사용함을 가정하여 계산된 사용자수			수용능력 ()	
		출입구 수와 최대거리	수용능력(사용자수)과 가장높은 플랫폼의 높이에 따라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출입구 수와 최대거리 기준에 부합할 것			출입구 개수 () 최대거리 () m ☐ 합 ☐ 불 ☐ -	
		출입구	출입구는 놀이기구의 각기 다른 지역을 통해 분산되어 대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설계 및 제조	구조적 보전성	자유하강 높이	폐쇄형놀이기구의 최대하강높이는 2000 mm 를 초과하지 않을 것.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외부로 오를 가능성에 대한 보호	외부로 오를 수 있음에 대한 보호처리는 바닥에서 수직높이 2 m 까지, 그리고 잠재적인 발판 또는 손잡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부터 높이 2 m 까지 제공될 것.			☐ 합 ☐ 불 ☐ -
		공간의 결정	하강공간	600 mm 초과, 1500 mm 이하의 자유하강높이에 대하여 하강공간은 제1부에 부합할 것. (만약 하강구역 보호처리가 수직면에도 되어있는 경우 1 m로 감소될 수 있음)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연결체	연결체는 도구 없이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
로프			모든 로프는 매듭지어진 형태이어야 하며 섬유는 헤어지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나일론로프의 끝 부분을 열로 봉합하였을 때, 날카로운 끝이 없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	
			로프오르기 및 걷기는 추락 시 팔다리가 완전히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될 것. 안전한 움켜잡음과 로프의 마찰로 인한 화상방지가 필수인 곳에서는 로프의 적당한 부분에 보호덮개가 있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 ☐ 합 ☐ 불 ☐ -	
특정 미끄럼 특		일반	이 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부 미끄럼틀의 기준을 따를 것.			☐ 합 ☐ 불 ☐ -	
	접근성	출발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단, 인접플랫폼, 경사로 등이 있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		
	출발지점	수평의 출발지점 길이는 1 m 이상일 것. 출발지점은 주행경로이동로와 별개로 분리될 것.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		

(/)

접수번호		M291-26-	검사자	안진현 (서명)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8부. 폐쇄형놀이기구		결과치 "-": 해당없음
특 정 기 구	낙 하 미 끄 럼 들	앉는 위치	출발지점과 활강지점 사이 앉는 위치(변곡구간)의 곡률반경은 100 mm 이상일 것.	☐ 합 ☐ 불 ☐ -
		측면 보호대	낙하미끄럼틀의 측면에는 측면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측면보호대의 최상단 부분은 출발지점 부터 활강지점 및 도착지점 까지 연장될 것.	☐ 합 ☐ 불 ☐ -
			미끄럼틀 출발지점의 높이가 2 m 이상이라면, 미끄럼틀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했을 때, 측면 보호대는 적어도 500 mm 이상일 것	() m ☐ 합 ☐ 불 ☐ -
			미끄럼틀 출발지점의 높이가 2 m를 초과한다면, 미끄럼틀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했을 때, 측 면보호대는 적어도 750 mm 이상일 것	() m ☐ 합 ☐ 불 ☐ -
		활강지점	활강지점 경사각도는 제3부에 명시된 기울기를 초과해도 되나, 수직에서 측정하였을 때 기울기 가 15° 이상일 것.	() ° ☐ 합 ☐ 불 ☐ -
		도착 지점	도착지점에서 속도는 5 m/s 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. (도착지점의 수평길이는 4.25 m 이하일 것, 이는 마찰상수0.3, 속도 5 m/s를 가정했을때의 도착 지점 수평길이임)	() m/s ☐ 합 ☐ 불 ☐ -
		하강 공간	하강공간은 제3부 4.8에 따를 것. 단, 사용자가 도착지점 말단부분에 이르기 전에 정지한다면, 도착지점 말단부분부터 전방으로 하강공간은 1 m 까지 줄어들 수 있음	() m ☐ 합 ☐ 불 ☐ -
	오버헤드트랙 (단단함)라이 더		이 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오버헤드트랙라이더는 제4부(공중놀이기구)를 따를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주행기는 멈춤 장치에 의해 움직임이 제한되도록 오버헤드 트랙내에 고정되어 있을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오버헤드트랙에는 1개의 주행기만 달려있을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주행기는 주행 시 오버헤드트랙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얽매이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출발 및 도착지점에 설치된 멈춤장치는 적절하게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일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멈춤장치는 연결요소의 전체길이의 75 % 혹은 울타리 후방으로부터 최소 1 220 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위치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평행하게 배열된 오버헤드트랙라이더는 두 기구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연결체는 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. 로프가 사용된다면 로프의 지름은 16 mm ~ 45 mm 사이일 것.	☐ 합 ☐ 불 ☐ -
			손잡이는 폐쇄된 형태이어서는 안될 것(예, 올라미) 좌석은 링이나 끈으로 구성된 형태이어서는 안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좌석은 적절하게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 질로 감싸져 있을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좌석의 하단면에서 바닥사이의 지면간격은 350 mm 이상일 것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제4부에서 명시된 것처럼 좌석에 69.5 kg의 하중을 가하고 측정 시 주행기의 최고 속도는 7 m/s를 초과하지 않을 것	() m/s ☐ 합 ☐ 불 ☐ -
			부상을 야기할 물체는 하강공간 내에 있지 않을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주행경로를 따라서 수직표면(예, 벽, 네트 등)이 존재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적절하게 오버헤드트랙라이더를 에워쌀 수 있는 구조 (예,네트)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버헤드 트랙 양 측면 방향으로 적어도 1 220 mm 의 공간이 있을 것	☐ 합 ☐ 불 ☐ -
	볼풀		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볼풀에서 노는 동안 볼풀 밖으로 볼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측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바닥면은 물체가 끼이지 않도록 설계될 것	☐ 합 ☐ 불 ☐ -
			볼풀 내에서 어린이의 은폐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볼풀의 깊이는 600 mm 이하일 것.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36개월 이하의 유아가 사용하는 볼풀의 깊이는 450 mm 이하일 것.	() mm ☐ 합 ☐ 불 ☐ -

(/)

접수번호		M291-26- .		검사자	안진현 (서명)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8부. 폐쇄형놀이기구			결과치 "-": 해당없음
특 정 기 구	볼풀	질식의 예방을 위해 볼의 지름은 적어도 70 mm 이상일 것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볼풀의 입구와 볼풀 내 접근가능한 플랫폼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1 00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으로 이용되는 볼풀	일반적인 놀이영역의 볼풀장과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이 분리되어 있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
		관찰/관리 영역에서 볼 수 있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
		볼풀의 최대 깊이가 400 mm 이하일 것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으로 이용되는 볼풀은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의 말단부터 진행방향으로 2 000 mm 의 길이를 제공할 것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으로 사용되는 볼풀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			☐ 합 ☐ 불 ☐ -
☐ 낙하미끄럼틀 설치됨 ☐ 오버헤드 트랙라이더 설치됨 ☐ 볼풀 존재 설치됨		특이사항			

(/)